

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
동의안

인천광역시

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2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- 가.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,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(시세) 감면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감면대상자 :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다만, 사망자·실종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세목별 감면내역

1) 주민세 균등분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(개인, 개인사업자분에 한함)을 면제한다.

2) 자동차세 소유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세월호에 선적·멸실된 생계형 화물자량(화물차, 특수차)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.

3)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.

4) 취득세

- 세월호사고 희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, 이에 따라 희생자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다만,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기계장비의 가액(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다. 기타

- 1)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2)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감면추계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감면추계

1. 우리 시 피해현황(2014. 5. 28일 현재)

- 승선 36명, 구조 19명, 사망 16명, 실종 1명

2. 시세 세목별 감면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취득세	주민세	자동차세	지방소득세	지역지원시설세	지방교육세
감면규모	54,094	25,000	422	7,152	없음	268	21,252

※ 가족포함 63명의 2013년 부과기준 추산, 2014. 5. 28일 현재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</p> <p>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</p> <p>⑤~⑧ (생략)</p> <p>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</p> <p>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</p> <p>⑤~⑧ (생략)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